

2010. 4. 15. (목) 10:00

제1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 - - 2
2.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5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7
4.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 - 11
5.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16
6.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9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 - 22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6.
- 나. 제출자: 신주범의원 외1인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4. 14.
- 마. 의안번호: 제2010 - 23호

2.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저귀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자들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 적용
 - 노인성 질환자가 사용할 기저귀 지급
 - 노인성 질환자들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
- 나. 정의(안 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풀이
- 노인성 질환자 ⇒ 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치매, 중풍(뇌졸중)으로 확진을 받은 자
- 기저귀 ⇒ 노인성 질환자의 배설물(대·소변)을 받아 낼수 있는 물품

다. 지원대상(안 제3조).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라. 지원기준(안 제4조).

- 1주 3팩(10개/1팩)을 매월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최초 신청 경우 신청일 속하는 달의 남은 분량 지급)

마. 신청(안 제5조).

- 신청 ⇒ 별지서식으로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신청자 ⇒ 본인, 부양가족, 마을이장

바. 지원의 중단(안 제6조).

-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때
-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행정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
-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사. 시행규칙 및 부칙(안 제7조).

-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예산 확보 시 시행한다.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법적근거로 마련하였으며,
- 노인성 질환자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기저귀를 지급하여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4. 14.
- 마. 의안번호: 제2010 - 13호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 2. 6)에 따라 납세자의 세율부담을 완화코자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09. 5. 29. 조례 제1926호)하고 부칙에 '09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09년도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 '10년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조례개정 권고안에 따라 도시계획세율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규정한 거창군세조례('09. 5. 29 조례 제1926호)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입법보완 시까지 군민 세부담을 완화함
 -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4.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거창군세조례를 정비한 후 시행하였으나,
- '09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결과 군민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전 「지방세법」개정이 곤란하여,
- 행정안전부 세율인하 권고 기준에 따라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거창군세조례 부칙에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4. 14.
- 마. 의안번호: 제2010 - 14호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등이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 및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의 종류와 기준 및 금액 신설

(안 제3조, 안 별표 1의2 신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

나. 수수료의 징수방법 개선, 납부자의 편의 도모(안 제5조).

- 일반수수료 →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 추가
-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 수수료 →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 추가

다. 수수료의 반환 규정미비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고려한 수수료의 환불 근거 마련(안 제6조 단서 신설).

-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침
- 발급기관의 착오, 민원사무 종결 전 민원 취하 → 납부한 수수료도 반환

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정비(안 별표 1).

- 행정안전부의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 및 관계 부처로의 사무이관에 따른 신상에 관한 항목 정비
 - 부양가족사실확인: 외교통상부 이관 ⇒ 존치
 - 독자사실확인: 병무청 이관 ⇒ 존치
 - 호(제)적부 멸실확인(무적자사실확인): 법원행정처 이관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사실확인으로 명칭 변경 존치

-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 (식품, 공중위생)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관리대장 사본교부
 -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 관리대장 사본교부
 - 철거사실 증명 ⇒ 건축물말소대장 사본교부
- 개별 법령으로 명시되거나 폐지된 수수료 항목 삭제
 - 지방세납세증명 ⇒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료 발급
 - 건설기계 저당(말소)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수수료 명시(대당 1천원)
 -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
 - 조립실적확인 ⇒ 발급 실적 없음
 -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발급 실적 없음
 - 원천징수 공제증명 ⇒ 발급 실적 없음
 - 보상금 지불증명 ⇒ 토지수용확인서로 대체

4.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침」에 따라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일부개정 하였으며,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2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과 행정안전부의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개별법령으로 명시되거나 폐지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편익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4. 14.
- 마. 의안번호: 제2010 - 15호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9569호, '09. 4. 1공포)으로 법률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소관 위원회의 명칭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종전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관계 법령으로 이관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과 목적조항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조례 제명,

안 제1조 · 제2조).

- 조례 제명 변경: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인용법령 제명 변경: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도로명주소법」

나.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관계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삭제함

-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 ·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과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 ⇒ 조례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5조).
-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 ·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서 규정 ⇒ 조례 삭제(안 제6조, 제7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절차와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의2와 영 제12조의2에서 각각 규정 ⇒ 조례 삭제(안 제9조, 제10조).
-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기준과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대장규칙」에서 규정 ⇒ 조례 삭제(안 제13조, 제14조).
-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와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규정 ⇒ 조례 삭제(안 제19조, 제20조).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규정 ⇒ 조례 삭제(안 제26조).
- 그 밖에 삭제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별지서식을 삭제함(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 포함) 시 제작 비용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내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군수가 고시하고, 군 수입증지로 징수함

라.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의 관리·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함

마.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 광고를 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

-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바. 법령 개정으로 종전 ‘새주소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9장(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 사. 그 밖에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변경함(안 제12조, 제6장 제목,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도로명시설 ⇒ 도로명주소시설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개정되고, 관련법령, 시행령, 규칙 등에 종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전 조례의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항을 신설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체계적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4. 14.
- 마. 의안번호: 제2010 - 16호

2. 개정이유

종전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됨에 따라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제1조).
 -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 변경
 - 「측량법」 제28조 제4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중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외에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기능을 추가하고, 지명의 조사내용 ·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10조).

- 지명의 조사 ⇒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하되,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
하여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하며,
-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 ⇒ 인접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고,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

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의견청취,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에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4. 검토의견 요지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전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관련한 현행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4. 14.
- 마. 의안번호: 제2010 - 17호

2. 개정이유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조례로 신설하여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80호, 2009. 8. 13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와 같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5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규율함에 있어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존속시한을 조례로 명시함(안 제
7조의2 신설)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함
(조례제정·시행일 2009년 12월 30일부터 5년간)

나.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로서 연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함(안 제8조제4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규정 삭제)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이므로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따른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 하였으며,

-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을 제한코자 삭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4. 14.
- 마. 의안번호: 제2010 - 22호

2. 변경이유

- 삼도 경계지역인 고제면의 사회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문화체육회관 건립을 통하여 체육 · 문화 공간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거창 상수원보호구역 상류하천(황강천, 지방2급하천)내에 위치한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상수원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경작토지를 매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취득재산)

□□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건립 부지

(단위 :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5필지 / 건물 1동	4,128.2	23,766			사 업 비 : 200백만원
1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2	2,188	11,815	2010	문병규	
2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3	545	2,943		류기흠	
3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4	392	4,194		이운석	
4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4-1	732	3,952		오순이	
5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5	106	532		오순이	
6	건물	고제면 농산리 254	165.2	330		고제포도 영농조합	

□□ 거창 상수원보호구역내 부지

(단위 :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1필지	11,766	50,476			
1	토지	거창읍 양평리 972-1	11,766	50,476	2011	신정오	

4. 검토의견 요지

-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건립 부지 매입안은 고제면이 거창군 최북단의 3도 경계이자 관문으로 인근 도(전북, 경북)의 지역보다 문화·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고제면 지역에 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평생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고제중학교 인근 토지를 매입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2010년도 사업비 10억중 국비 6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예산에 미편성 되어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예정(국민체육진흥기금)이며, 도비 2억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군비 2억원에 대하여는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예정
- ⇒ 2011년도 사업비 7억원(도비 4억원, 군비 3억원)확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함

○ 거창 상수원보호구역내 부지매입안은 거창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하천(황강천, 지방2급하천)내에 위치한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상수원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연차별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년차별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불검출
- ⇒ 2002년, 2007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 ⇒ 2003년 토지 매수를 신청하였으나 감정가(149백만원)와 희망가(400백만원)의 차이로 소유자 매도 포기
- ⇒ 2008년 12월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매수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불투명
- ⇒ 매입시 감정가격과 매도 희망가격 차이로 소유자가 매도를 포기할 경우에 따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 공시지가 50,476천원 매도희망가격 500,000천원
- ⇒ 본 토지를 매입 후 남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농경지 (44,393m²)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